



정보공개서

(주)벨킨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1010051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1.10.3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28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873 번지 3 층 (주)벨킨스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 1544-4753 Fax : 02-6918-4853

www.velkins.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11.10.06	2011.10.07	(주)벨킨스 사업자등록번호 132-86-00830 법인등록번호 284111-0098826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벨킨스	VELKINS (벨킨스)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873 번지 3 층	
특수관계인 (임원)	함지훈(사내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함지훈	1544-4753	02-6918-485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VELKINS	VELOCE + KINETIC + SMART
상호	벨킨스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VELKINS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44157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본 영업표지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벨킨스	-
	VELKINS	-
		-

5.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01,890	189,983	311,906	1,486,411	-2,809	-2,753
2022년	286,244	163,665	122,579	1,260,622	-189,388	-189,327
2023년	170,763	131,818	38,945	782,450	-83,478	-83,634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 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	---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함지훈	2021.03~현재	(주)벨킨스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벨킨스 (상표권)	37 류	출원일 2011.09.15 등록일 2012.11.07	출원번호 4120110028460 등록번호 4102441400000	(주)벨킨스	2032.11.07
VELKINS (상표권)	37 류	출원일 2011.09.15 등록일 2012.11.07	출원번호 4120110028459 등록번호 4102441570000	(주)벨킨스	2032.11.07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VELKINS]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11 년 10 월 18 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벨킨스	VELKINS	함선학	2011.10.17~2021.03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873 번지 3 층
(주)벨킨스	VELKINS	함지훈	2021.03~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873 번지 3 층

3. [VELKINS] 업종

영업표지	업종	
VELKINS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해충방제

4.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 [VELKINS]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0	19	1	19	18	1	17	16	1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5	4	1	5	4	1	4	3	1
강원	1	1	-	1	1	-	-	-	-
충북	4	4	-	3	3	-	3	3	-
충남	2	2	-	2	2	-	2	2	-
전북	1	1	-	1	1	-	1	1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1	1	-	1	1	-	1	1	-

5. 최근 3년간 [VELKINS] 가맹점 수

당사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19	-	-	-	-	19
2022년	19	-	-	1	-	18
2023년	18	-	-	2	-	16

6. [VELKINS]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VELKINS]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6	64,392	무점포	130,266	무점포	16,064	무점포	16곳 산정

서울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자체 프로그램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VELKINS]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VELKINS]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6	3,874일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비공개)	5,905	-
판촉비	-	(비공개)	-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U뱅킹사업단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 가 203 번지	080-365-5000 02-2002-5036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필요서류 (은행양식)	-가맹금예치신청서 1부
준비서류	우리은행 계좌가 우리은행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 가맹점사업자의 타행계좌 사본 1부 - 가맹점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1부
이용방법 (다음 중 택 1)	방법1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 가맹금예치신청서 접수 → 은행 영업점에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수취 →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방법2 가맹본부가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에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등록 → 가맹점사업자의 휴대폰으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문자로 발송 → 휴대폰 문자로 받은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예치가맹금의 예치가 가능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우리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전제

본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가가 본사에서 요구하는 계약의 전제를 성실히 따름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귀하가 개인사업자를 등록 또는 상호를 변경할 시의 대표 상호는 한글 ‘벨킨스’로 합니다. 단, 경업금지조항에 의거하여 ‘벨킨스’사업자 이외 기존 사업자 등록상의 ‘소독 및 방역업’ 종목을 금지하며, ‘벨킨스’계약 이후에 신규 사업을 운영하는 겸업을 금지합니다.]

[둘째, 대표자 및 종사자는 벨킨스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벨킨스의 소속으로 전산 등록이 안됨은 물론 서비스 등 벨킨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기존에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고객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벨킨스의 고객으로 등록하여 가맹점사업자로서 벨킨스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VELKINS]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1,100 만원	계약 체결 시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교육비	대표자 1 인: 110 만원 종사자 1 인: 66 만원		-개점 전 서비스 교육

***할인혜택:** 가맹본부는 신규가맹의 공격적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적절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보관함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 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종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 일(번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사업법 제 9 조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액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며 계약이행 보증금은 100 만원입니다.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합계	1,276 만원
가맹비	1,100 만원
교육비	대표자 1 인: 110 만원 종사자 1 인: 66 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	-------	----

가맹희망자	1 단계: 영업권 선정 가맹본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 희망자가 원하는 영업권역 협의 → 시장 분석 → 가맹희망자의 영업권 결정 2 단계: 사무실 입지 선정 영업권 내의 상권분석 → 서비스 이동경로 분 석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사무실 입지 협의 → 가맹희망자의 사무실 입지 결정	입지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소독업 신고증을 소유할 것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유할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별첨 1_1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①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VAT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내용(대상)	비고
러닝로열티	(주)벨킨스	매출액의 5.5%	익월 말일 결제	반환 안됨	상표 및 기술지원 비용	의무
고정로열티	(주)벨킨스	월 275,000원	CMS방식	반환 안됨	가맹사업 운영비용	의무

가맹본사의 전국계약 고객 관리 대행에 관한 결제	해당 지사	고객 미수금 제 외금액	익월 말일까 지 고객 입 금 확인 후 미수금과 비 용정산 후 5 일 이내 결제	반환 안됨	고객관리	의무
대중매체 광 고 분담금	(주)벨킨스	광고 별 금액산정	광고 실시 30 일 이전	반환 안됨	TV, 신문, 라디오 등	의무
개별 판촉비	상세 사항 확인					

② “상표 및 기술로열티” 대금산출 및 가맹지사 수익 분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자료 및 시스템등록 상의 매출에서 집계한 로열티는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결제 받고, 본사로 납부되어 집계된 매출은 로열티를 제외한 해당지사의 매출분배를 진행합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말일 당월 매출 내역을 가맹본부에 보고하며, 가맹본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월 매출 내역 산정 시 미수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넷째,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정하는 회계사무소와 거래하도록 합니다.]

③ 개별판촉비에 관한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 마케팅으로 블로그, 카페, 이벤트, 협찬, 기념품 등 독자적 기획 및 개설은 본사운영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식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홍보 팜플렛, 협찬 사은품, 기념품 등)은 개별적 사용은 본사 협의 후 진행한다.]

④ 대중매체 광고 분담금에 관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중매체라 함은 TV, 라디오, 신문 등 일반적인 광고 매체를 말합니다.]

[둘째,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기획과 TV CF 등 제작물의 제작은 본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제작물에 대한 방영, 송출, 게재 등 배포에 관한 비용을 동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합니다.]

⑤ "관리 대행 수수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귀하에 지급하여야 할 관리 대행 수수료 산정 시 미수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00%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기술, 업무지원	기술지원, 시스템업무지원	요청 시	문의: (주)벨킨스 (1544-4753)
고객관리	고객관리 시스템 점검	년 중	
서비스 품질관리	차량,유니폼,기자재,가맹점종사자 등 고객서비스 규정준수 점검	년 중	
재고관리	장비, 기자재, 물품 등의 실재제고 수량조사 및 장부점검	년 중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입,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및 장부점검	년 중	
월별 매입/매출	당월 매입, 매출 내역서	매월 말일 제출	

분기별 매입/매출	회계 또는 세무사 매입/매출 합계표	분기별 말일 제출	
연도별 매입/매출	회계 또는 세무사 손익계산서	매년 4월1일 제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 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 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할 수 있으나, 영업의 임대 또는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 ② 제 1 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 60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승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⑤ 영업양도는 기존 계약고객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신규가맹점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⑦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7 일 이내에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차량광고물, 유니폼, 홍보물 등 영업표지가 포함된 모든 물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본부는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7 일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업표지가 포함된 물품을 이용한 영업활동 또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표권침해 등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 1) 가맹점이 폐업 및 계약종료 또는 경고로 인한 해지 등으로 인해 벨킨스와의 계약관계가 끝났을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사후조치를 주관합니다
 - 2)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가맹본부에서는 고객 서비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이관에 관한 고객방문이나 공지, 관리 이전 등에 관한 절차를 시작하며 해당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릅니다.
 - 3) 이러한 고객 중 가맹본부와 전국계약으로 체결된 고객은 가맹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인근 가맹점에 인계하도록 합니다.

4) 고객 중 가맹점사업자에서 자체적으로 영업하여 계약을 진행한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를 앞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사후조치를 결정하며, 계약된 고객을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후조치 할 수 없습니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등에 통일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당사는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위해 본사에서 물품을 공급하여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 등을 출시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 중에서 소유권한은 본사에 있고, 가맹지사로 대행하는 물품의 대행 규정과 약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행 할 물건의 표시

- 제 품 명 : 유인포충기 'WINDY 5'
- 이후 제품 종류 추가 예정

2) 규정 및 약정사항

약정사항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해충방제서비스 및 본사부담 영업프로모션에 대해 위생기기를 제공하는 가맹본부(이하 '본사'라 한다)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맹점(이하 '지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스마트프로모션”이라 함은 해충방제 계약에 있어 비래해충 위생기기(이하 ‘유인포충기’라고 한다)의 지사 구매 부담을 덜어 보다 생산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충기 본사 지원정책을 말한다.
- ② “위생기기관리비”라 함은 본사에서 제공받은 유인포충기를 지사에서 관리함에 있어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본사가 지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소모품”이라 함은 유인포충기를 점검 관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트랩, 램프, 커버(뚜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 주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 ④ “계약기간”이라 함은 제공된 포충기를 상품으로 체결된 계약고객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2 년간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해지 시 본사 위약금 정책을 따른다.

제 3 조 (공동 사업의 인식 및 상호존중)

- ① “본사”와 “지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동 사업임을 인식하여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조기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적용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상호 존중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 4 조 (업무 협약 내용)

본사는 지사의 원활한 영업지원과 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유인포충기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사계약 고객에게만 공급하며, 포충기의 소유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 2) 공급되는 포충기는 별도의 수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시에 10 대 이상의 포충기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본사와 사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사의 물량공급 스케줄에 의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3) 포충기가 납품되는 초기 택배비는 지사에서 지불하며 이 후 장비의 고장 수리에 따른 AS 왕복택배비의 지불은 본사와 지사 공동으로 지불하도록 합니다(입고:지사, 출고:본사)
- 4) 장비의 이상 발생 시(장비고장) 지사는 장비를 회수하여 본사로 입고 시키고 본사에서 수리를 거친 뒤 다시 지사로 보내 현장 내 재설치 할 수 있게 합니다.

5) 장비의 이상 및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그 수리기간 동안 장비가 설치되어야 되는 경우 본사가 보유한 대체 장비로 교환하도록 합니다.

단, 본사에 대체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사에서 입고된 장비를 수리한 뒤 공급합니다.

7) 장비의 고장 수리는 주로 안정기 이상의 경우 수리가 진행되며 기타 AS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체조건	교체시기
안정기	불량	불량 입고 시
램프	깨진 상태	사진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즉시
	전원불량(출고 후 1개월 이내)	전원불량 상태 확인 후
뚜껑	깨진 상태	사진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즉시

램프불량의 경우 동일 조건으로 1 회 이상 AS 처리 불가합니다(특정 장소에 대한 문제로 포충기 설치 위치를 변경)

8) 공급된 포충기는 절대 판매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 포충기는 본사에서 공급하지만 그 관리는 지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10) 포충기 관리는 트랩교체, 램프교체, 뚜껑교체, 청결유지, 분실 및 파손에 대한 감독관리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11) 지사에서 관리하는 포충기에 대해 본사에서 해당 지사에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12) 포충기 서비스 비용은 정사가 35,000 원에 최소가 25,000 원으로하며, 최소가 25,000 원을 기준으로 지사에 포충기 관리비 10,000 원을 지급합니다.

지사는 관리비를 통해 포충기에 사용되는 트랩 및 기타 기자재 등을 구매하여 점검하고 교체하도록 합니다.

13) 관리비는 적정금액(25,000 원)을 기준으로 상향 시 차액만큼 지사에 100% 지급됩니다.

14) 초기 계약 조건으로 포충기의 기본가(25,000 원)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이 후 고객의 변심, 영업 대응, 재계약 조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충기 비용을 조정해야 될 경우 계약기간(2 년)을 이행 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 25,000 원 이하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상호 50%씩 부담합니다.

16) 2 년 이후에도 최대 하향 조정금액은 최대 20,000 원까지 이며 그 이하의 금액발생 시 지원을 중단합니다.

17) 포충기 관리에 대한 로열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분	본사	지사
35,000 원	15,000 원	20,000 원
30,000 원	15,000 원	15,000 원

25,000 원(기준가)	15,000 원	10,000 원
20,000 원	12,500 원	7,500 원

편의를 위해 도표는 5,000 원 단위로 표기 하였습니다.

제 5 조(정보의 제공 및 기밀유지)

- ① “본사”와 “지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내용, 회원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사”와 “지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정보를 제휴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대금결제사항)

“지사”의 포충기 관리대행에 따른 “위생기기관리비” 결제는 다음과 같다.

- ① 고객의 결제(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가 진행된 것을 익월말일까지 확인 후 5 일 이내 결제 진행.
 - ② 서비스 비용이 출금되지 않을 경우 “위생기기관리비”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 단, “본사”는 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과의 연락을 취해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사”또한 관리 책임으로 결제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상호 노력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

“본사와 “지사”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본 위생기기 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 고객이 미비할 시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및 서비스 상품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서비스의 종료 또는 서비스 상품의 자동 소멸 시 지급된 위생기기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다시 회수하며 지사는 회수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벨킨스]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서비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전국적인 서비스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종사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기술력과 서비스시스템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상품·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위생해충 방제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1차 서면경고 2회 위반: 2차 서면경고 3회 위반: 계약 해지	
혐오곤충 방제서비스			
설치류(쥐) 방제서비스			
방역 살균소독서비스			
기타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상품/서비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중 신상품 출시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신규 서비스상품의 제공 또는 기존 서비스상품 제공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

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서비스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별첨 1_1 또는 정보공개서 V-1-1)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을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권장하며, 가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영
업개시의 시점에 별도의 수단으로 제공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
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충방제 업종	VELKINS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VELKINS]와 동일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로 설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충방제 업종
의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 현재 고객의 주소이전, 계열사업장, 신규고객의 소개 또는 고객이 특정 가맹
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원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
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지사의 영업권과 본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관계는 아래와 같게 정리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본사직영의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본사는 전국 고객에 대해 영업을 진행 할 수 있고, 본사와 계약을 원하는 고객과는 계약 할 수 있으며, 관리는 해당지역의 영업권을 가진 지사에서 담당합니다.

③ 단, 가맹지사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계약고객의 관리 위탁은 지사의 기술력, 인력, 장비, 시스템, 가맹지사에 대한 본사의 감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사가 결정하고, 고객관리 중에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고객 불만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사에 관리권한을 이양 혹은 본사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대도시는 구단위, 중소도시 및 기타지역은 군단위로 1 개 지사 개설 가능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90 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 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영업지역 변경 완료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8)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범위

[첫째, 다음과 같은 경우 지사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영업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지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현재 시점에 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고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약관리를 인정한다. 단, 이러한 경우 지사는 해당 고객들의 정보를 계약체결 시점에 본사에 제공하여 추후 지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2. 지사의 현재 계약고객이 이사,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영업지역에 위치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가맹점과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단,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 대한 상품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의 저하 및 지사 상호간의 영업지역 침범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사는 지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사의 영업권 이외의 지역에 영업 및 서비스를 진행하다 해당하는 지역권을 담당하는 신규 가맹점이 계약이 되었을 경우 가맹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 유입되거나 가맹본부의 전국계약에 의해 계약체결된 고객을 별도의 정식요청으로부터 3개월 내에 가맹본부 또는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인계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서 이를 주관합니다.

- 1)가맹본부의 전국계약 또는 본부명의로 계약 체결된 고객은 신규지사 설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규지사로 서비스 및 계약을 이행합니다.
- 2)지사의 자체적인 영업에 의해 계약 체결된 고객의 인계에 대한 권한은 해당 지사에서 갖는다. 단,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로 인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신규지사와 협의 하여 고객서비스 및 계약을 이행합니다.

9) 가맹본사의 영업 범위

[첫째, 지사 영업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영업, 계약, 지사 관리권한 배정 및 이전 등의 모든 권한은 본사에 있습니다.]

[둘째, 지사의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본사에서 영업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으로 체결된 계약 고객의 관리권한 및 의무는 지사에게 있습니다.]

[셋째, 또한 가맹지사는 지사의 영업권내에서 발생한 고객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및 거부 할 경우 [서비스 품질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가맹지사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본사의 관리 대행

[첫째, 본사와의 계약 이후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본사의 기술적, 서비스적인 대행이 필요할 경우 본사에서 이를 수행하며 지사에서는 관리대행 시 받는 본사의 교육과 업무협조에 충실히 임하여 본사의 관리대행이 필요 없이 독자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도록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지사에서 관리를 하는 고객 중에서 본사의 기술인원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본사의 관리대행 및 교육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책정되어 매월 산출된 비용을 본사에 납부 또는 제외한 금액을 분배 받게 됩니다.]

a) 관리의 기준

구분	관리구분 및 지원 내용	비용 산출
본사	1. 기술연구소 또는 본사 기술팀을 통해 고객에게 기술적인 컨설팅 혹은 관리적, 서비스적인 지원 2. 지사에 대한 현장 및 고객관리에 대한 교육 및 대행 3. 정기적인 문서(보고서, 제안서, 기타 요청서류)작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고객사업장 대행비용을 산출하여 본사에 납부함 또는 제외한 금액을 지사에게 분배 (실비수준으로 책정)
지사	1. 해충방제 서비스 2. 기자재 설치, 3. 기타 고객요청 서비스	

b) 고객사업장 관리대행 비용의 책정 기준

기준	a. 관리 대행비는 본사에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동에 따른 비용등을 종합하여 실비수준으로 산출됨 b. 기술지원료는 로열티와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이며, 상황에 따라 또는 선택에 따라 청구되는 비정규적인 비용을 말함
책정 대상	a.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기술적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b. 지사에서 본사의 기술적 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c. 고객사에서 벨킨스 본사 기술자의 투입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경우

5. 고객관리 및 서비스 품질관리 규정

[당사는 "VELKINS"의 방역 소독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이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고객에 대한 관리실태 및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서비스, 제품 등)을 판매한 모든 고객을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중 기존 계약 또는 거래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역 및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에는 반드시 결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2) 본사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품질 관리 감독과 고객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고객을 전산을 통한 관리를 해야만 하며(velkins.com/admin) 모든 고객의 서비스 기록과 보고 기능을 작성 하고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전달 -----> 서비스 실행 -----> 서비스 기록 보고

서비스기록 보고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절차는 본사에서 전달받은 고객에 대해 가맹지사 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고, 본사에서 고객에 대한 관리 현황 파악과 품질을 관리하는데 주요 정보로 활용하며, 이러한 전산적인 방식 외에 서비스 품질 파악을 위한 방문이나 전화 및 기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록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서의 허위 기록은 [서비스 품질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필수 1. 영업의 주체 또는 고객발생의 경로가 어떠한 경로인가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고객은 벨킨스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필수 2. 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 관리사항, 금액, 계약상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지사는 반드시 전산상에서 고객의 상태와 정보를 변경하고 본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 3. 고객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각적으로 전산상에서 계약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시키며, 계약종료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등의 수반되는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 중 기존 계약 또는 거래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시점에 영업지역 내의 고객뿐 아니라, 영업지역 이외의 고객을 등록 하셔서 추후 영업지역 침해 등의 분쟁을 예방 해야만 합니다.

4) 가맹본부는 [VELKINS] 가맹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고객에게 서비스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의 수단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고객 등록 시 고객정보, 계약내용, 서비스내역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상호분쟁, 가맹사업 서비스품질 저하 등 가맹사업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정한 서비스는 당사에서 정한 서비스 매뉴얼을 지켜야 하며, 고객군마다 규정된 장비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품질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객등록 의무조건 ● 기존에 관리 고객(방역소독에 해당되는 모든 고객) ● 자체적인 영업에 의한 고객)	1 회 위반: 1 차 서면경고 2 회 위반: 2 차 서면경고 3 회 위반: 계약 해지	

6.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62.7%	3.9%	33.3%	0.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0%	0.0%

7.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VELKINS]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 조 1 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5 조 1 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기준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5 조 1 항
○ [VELKINS]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5 조 1 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5 조 1 항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건
○ 신상품의 출시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약내용의 수정사항 발생	38조 1항
○ [VELKINS] 가맹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약내용의 수정사항 발생	38조 1항
○ [VELKINS] 가맹사업 영업영역의 확장을 위한 계약내용 수정사항 발생	38조 1항
○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 영업력 향상을 위해 지역권 조정사항 발생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주)벨킨스 (1544-4753)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신규 가맹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단, 당사는 신규 가맹점사업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VELKINS"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맹사업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3개월 이전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가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인은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인은 신규가맹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단, 당사는 신규 가맹점사업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VELKINS"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맹사업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전통지 및 본부승인 시	모든 권리의무	기본적으로 양도절차와 동일하며 상속인으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해당 없음	-	-	-
업무위탁	해당 없음	-	-	-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VELKINS]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 및 타업종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기간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 위반 시 진행절차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 방역, 소독업 ○ 해충방제 서비스 ○ 방충, 방균 청소 및 크리닝서비스	1차 조치 : 경업금지 서면통보 2차 조치 : 30일 이내 경업사업자 폐쇄 서면통보 3차 조치 : 법적조치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당사는 [VELKINS]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시간 및 본부와 가맹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통적인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비고
점주 자율 (다만, 고객이 용역서비스를 원하는 시간 준수 원칙)	연중무휴 (1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7일 전)에 당사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개서비스, 업무협조 등 공통적인 근무시간 준수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직원 및 근무 형태를 권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점사업자 본인 또는 종사자 1인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종사자 1인	가맹점사업자 부재시 가 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 용	빈도 및시기	비고
기술, 업무지원	기술지원, 시스템업무지원	요청 시	문의: (주)벨킨스 (1544-4753)
고객관리	고객관리 시스템 점검	년간	문의: (주)벨킨스 (1544-4753)
서비스 품질관리	차량, 유니폼, 기자재, 가맹점종사 자 등 고객서비스 규정준수 점검		문의: (주)벨킨스 (1544-4753)
재고관리	장비, 기자재, 물품 등의 실재제고 수량조사 및 장부점검		문의: (주)벨킨스 (1544-4753)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입,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및 장부점검		문의: (주)벨킨스 (1544-4753)

10.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마케팅비용 분담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개별 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홍보·판촉 활동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체적인 홍보,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 디자인, 홍보물 및 판촉물품 제작, 대행업체 선정 등 전국적으로 영업표지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등을 지원합니다.

단, 독자적 홍보·판촉 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서면을 통한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독자적으로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활동은 가맹계약상태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영업지역에서 홍보·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기획안 중에서 영업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방안을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맹점사업자는 인터넷 또는 대중매체(지역 대중매체 포함) 등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와 중복되는 광고 활동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성격	방식	분담절차	비고
대중매체 광고 분담	대중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 및 상품광고	대중매체(TV CF, 라디오, 인쇄매체, 옥외간판 광고 등)	본부 계획수립 → 가맹점 계획공지 → 분담금납부	협의조정
개별적 홍보 및 판촉	영업지역 상품홍보	홍보 및 판촉물 이벤트	본부 계획수립 → 가맹점협의절차 → 개별부담	본사 서면 승인

1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서비스, 영업 분야의 방법과 방식,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합계		38일 내외
사업설명회	- 가맹본부 방문상담 - 희망지역 확인	1
현장실사	- 가맹희망자 사업장 방문 - 종사자, 장비, 기자재 및 물품확인	7
계약준비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
계약진행	- 가맹계약 체결 - 교육일정 및 물품공급일정 협의	1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 기관에 가맹금 예치	1
교육 실시	- 기술, 서비스, 점포운영 교육 실시	7
상권분석 및 물품공급	- 영업지역 신규점포 개설 홍보전략 - 차량디자인, 유니폼 및 기자재공급	7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VELKINS] 가맹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 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 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 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 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 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 시, 소요시간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 점 방문 → 경영지도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VELKINS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가맹교육 (라이선스 취득)	인성교육 서비스교육 기술교육 영업교육 운영교육	이론교육 이후 현장 교육과 지원으로 구성	이론교육은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신규 종사자 교육 (라이선스 취득)	인성교육 서비스교육 기술교육 영업교육 운영교육	이론교육 이후 현장 교육과 지원으로 구성	이론교육은 신규가맹 또는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필수
라이선스 갱신 교육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1년 2회의 유 지보수 교육	기술교육 및 서비스교육	사전에 공지된 교 육일정 준수	필수 (미이수자 서비스 불가)
신상품 교육	신기술, 신상 품	기술교육 및 상품 서비스교육	사전에 공지된 교 육일정 준수	필수
관리자(교육 에 따라 종업 원 포함)교육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관리 자(교육에 따 라 종업원 포 함) 제반 교 육	이론교육 이후 현장 교육과 지원으로 구성	이론교육은 신규가맹 또는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필수

*당사의 신규 서비스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약기간 중 당사의 신규 서비스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VELKINS]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대상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가맹교육 (라이선스 취득)	가맹점주	240시간 (이론 40시간)	가맹비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신규 종사자교육 (라이선스 취득)	종사자	240시간 (이론 40시간)	660(1인기준)	신규채용 1개월 이내
라이선스 갱신 교육	종사자	2일	실비(1인기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신상품 교육	대표자 및 종사자	1~2일	330(1인기준)	출시에 따라 필수 이수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교육	종사자	240시간 (이론 40시간)	660(1인기준)	신규채용 1개월 이내

3. 교육·훈련의 주체

- ①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외 종사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②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사장(가맹점사업자) 및 종사자는 신규 가맹교육 또는 신규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 벨킨스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만 현장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라이선스화에 따라 갱신교육 미이수자는 서비스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4. 교육·훈련·공식회의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조항 참조

4. 교육·훈련·공식회의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주 뿐 아니라 종사자 개개인도 개별적으로 고객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역 소독업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와 종사자 모두 신규 가맹교육, 신규 종사자교육, 직무향상교육 등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정식적인 영업활동 및 서비스 활동을 인정합니다.]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종사자의 경우 기한 내에 신규 가맹교육과 종사자 기술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2조에 1항에 따른 불이익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1년마다 2회 실시되는 직무향상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2조 3항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2023 년 말 기준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수도권직영점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873 번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12 년 2 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8,23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자체프로그램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별첨2. 재무제표(2021~202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재무제표(2022~2023)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